

이·미용업소 거리두기 핵심방역수칙 의무

□ 대 상 : 이·미용업

□ 적용기간 : 2022. 4. 4. 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
□ 위 반 시 : 과태료 부과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

- 위반 당사자 : 10만원 / 관리·운영자 : 1차 50만원, 2차 100만원

□ 핵심방역수칙

※ 신고허가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해제 (2022. 3. 5.~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 적용	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	
	- 기본방역 수칙 게시·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	방역수칙 준수
	② 마스크 착용	
	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	* 음식물 섭취 시 예외	
	③ 음식섭취 금지	
	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	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
권고 사항	④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
	- 방역관리자 지정 -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	-
권고 사항	(대화자제) 부득이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경우, 대화 자제 (환기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(소독) 일 1회 이상 소독(공용물품, 손잡이, 난간 등) (시설 내 거리두기) 시설 내 2m(최소 1m) (공용시설)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	권고사항 준수

□ 11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참석자 수칙
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11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11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11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, 사적 모임인지 확인 ▶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11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	▶ 11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

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

□ 문의 :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 032-453-2630

남 동 구 청 장

